

꼭! 알아 두어야 할

중소기업 지원제도

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중요 지원제도를 매월 개제하여
경영지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활용
바랍니다.



인력 지원

◎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

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단체를 통해 재직자 직업능력교육,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공동채용 설명회,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.

❖ 지원규모 : 20여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(전체 예산 18.6억원)

※ '10년 지원현황 : 21개 조합·단체, 5,900명 지원(예산 26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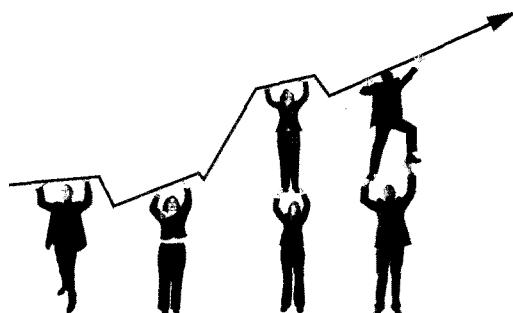
❖ 지원대상

-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단체

※ 조합·단체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

❖ 지원내용

- 조합의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60~70%를 지원(나머지는 조합 자체자금으로 조달)
- 중소기업의 양적·질적 인력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재직자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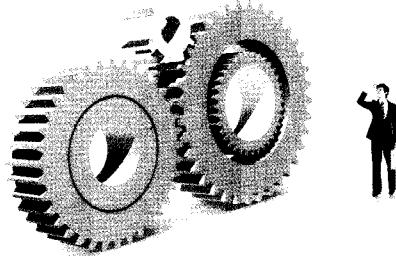


◎ 신청접수

-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

◎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: 042-481-3979
-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: 02-2124-3381
- 전화상담은 1661-1357(R&D 고객센터), 비즈인포(www.bizinfo.go.kr)



판로 지원

◎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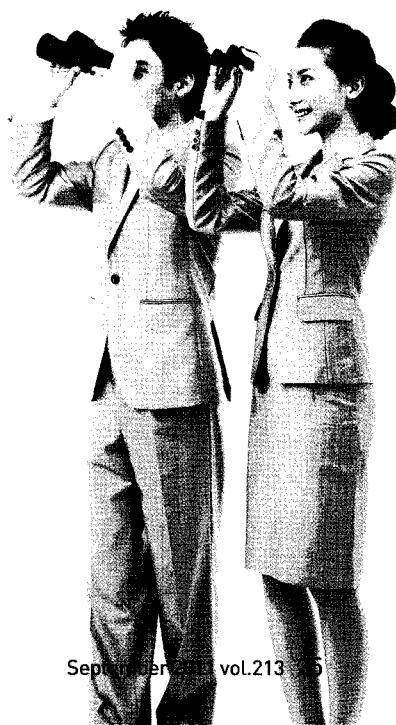
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상표 개발비를 지원하고,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언론매체 홍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
◎ 지원규모 : 상표개발 10개, 상표홍보 20개(전체 예산 22억원)

※ '10년 지원현황 : 개발지원 4개, 홍보지원 10개

◎ 지원대상

- 공동상표 개발지원 : 공동상표를 도입·이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의 상표 대표자
 -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
 -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선도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자
 -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 한 법인
- 공동상표 홍보지원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



관한 법률 제 28조(연계생산지원사업 등) 및 동법 시행령 24조(공동상표지원기준 및 절차 등)에 의한 중소기업공동상표 대표자

- 홍보지원은 정부가 개발지원한 상표 외에 자율적으로 개발·사용하는 상표도 법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대상이 됨

❖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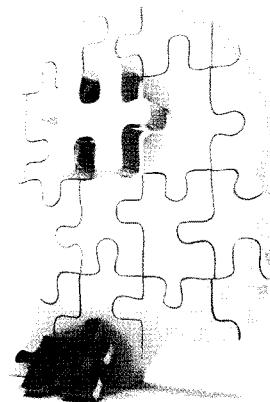
- 공동 상표개발 : 상표개발 소요비용의 70%, 상표당 5,000만원 한도
 - 공동 상표홍보 : 예산과 지원수요를 감안하여 TV, 신문 등 광고매체를 정하고 소요비용의 70%까지 지원
- ※ 지원금액과 대상매체는 선정심사 후 최종 결정

❖ 신청·접수

- 온라인(인터넷) 신청(www.bizfinder.go.kr)

❖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: 042-481-4470
- 중소기업유통센터 전시홍보팀 : 02-6678-9343
- 마케팅정보시스템 : www.bizfinder.go.kr
- 전화상담은 1661-1357(R&D 고객센터), 비즈인포(www.bizinfo.go.kr)



수출지원

◎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

해외 현지 경험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해외 현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70%를 지원해 드립니다.

◆ 지원규모 : 40여개사(전체 예산 78억원)

※ '10년 지원현황 : 314개사 지원, 업체당 평균 17백만원

◆ 지원대상

-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

◆ 지원내용

- 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팅, 마케팅 회사 등을 해외 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고 지원 대상 업체와 매칭, 소요 컨설팅 비용의 50~70% 지원

지원한도

- 일반 네트워크 : 업체당 북미, 유럽 등 2,000만원 / 중국 등 기타지역 1,500만원)
- 전략 네트워크 : 네트워크 당 2억원



◆ 신청 · 접수

-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를 통한 온라인신청

◆ 제출 서류

- 온라인 신청서(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요청서) 작성 후 업로드,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,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인증 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

◆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: 042-481-4493
-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: 02-769-6725
- 전화상담 국변없이 1357, 비즈인포(www.bizinfo.go.kr)